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 정 : 2017.1.4.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의거,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를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다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 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·투자자문재산의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 목과 같다.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
다.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재산운용 및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투자자문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 부과절차) ①회사는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회사는 집합투자가기위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④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 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 (설명 의무)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

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 (투자광고) ①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5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9조 (공시 및 통보) 회사가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